탄 원 서

통일교 신도 집단입당 관련 정당법 위반

사건번호	2025고합1506
담당 법원·재판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
피고인	김건희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재판부께

1. 탄원의 취지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재판부께. 저는 김건희 피고인의 정당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시는 재판부에, 혐의의 중대함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한 사람의 책임은 끝까지 증거에 따라 가려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탄원서를 올립니다. 정당의 대표자를 뽑는 절차는 많은 당원의 선택과 민주적 의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과정에 부당한 이익 약속이나 조직적 개입이 있었다면 가볍게 볼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적인 관심이 높을수록 피고인이 실제로 무슨 말을 하고 무엇을 약속했는지, 그 의사가 어떤 경로를 통해 전달되었는지 더욱 정확하게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고인에게 귀속될 행위만을 구분하여 판단해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2. 공소사실의 엄중함과 아직 확정되지 않은 책임

특검은 피고인이 전성배 씨 등과 공모해 2022년 11월 무렵 통일교 측에 당원 가입을 요청하고, 특정 당대표 후보의 선출을 돕는 대가로 정책 지원이나 비례대표 자리와 관련된 이익을 약속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이 증명된다면 정당 운영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를 단순한 정치적 친분으로 가볍게 다뤄 달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이 사건은 아직 제1심에서 심리 중입니다. 2026년 8월 21일 첫 정식 공판에서 피고인 측은 공모와 이익 제공 약속을 부인했고, 특검은 당원명부와 관계자 진술 등을 제시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주장을 증명된 사실로 바꾸어 적기보다는 재판부가 증거를 토대로 결론을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3. 실제 요청과 공모 여부를 구별해 주십시오

재판부께서 특히 살펴주셨으면 하는 것은 피고인 자신의 말과 관계자가 전한 말이 같은 것인지 하는 점입니다. 대화를 직접 들었다는 사람의 진술, 전성배 씨와 윤영호 씨 사이의 연락, 당원 가입을 추진한 통일교 측의 내부 결정은 서로 연결되어 보일 수 있지만 각각 다른 행위입니다.

피고인이 관계자의 계획을 알고 함께 실행하려는 의사를 가졌는지, 아니면 관계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행동한 부분이 있는지 구별해 주십시오. 검사가 제시한 연결고리가 있다면 충분히 살펴주시되, 다른 사람의 추정이나 설명만으로 피고인의 공모를 인정하는 일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 이익 제공 약속의 구체성과 법률요건

이번 혐의는 단순히 많은 사람이 입당했는지에만 달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당법 제50조에서 문제 되는 것은 당대표경선 등의 목적과 일정한 상대방에 대한 재산상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의 제공·약속 등입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 어떠한 이익을 약속했다는 것인지, 그 내용과 시기, 상대방, 피고인의 인식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피고인 측은 첫 공판에서 공직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으며 전성배 씨와 공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의 이러한 주장을 사실로 확정해 달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약속의 존재와 피고인의 관여가 객관적인 자료 및 법정에서 신빙성이 인정된 진술로 충분히 입증됐는지 확인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더 나아가 법에서 정한 이익 제공의 상대방이 누구인지도 중요할 것입니다. 피고인에게 귀속된 약속이 특정 후보자나 경선 관계자에 대한 것인지,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전달되었다는 것인지 분명히 구별해 주십시오.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한 결과와 법이 처벌하는 이익 제공 약속 사이의 차이가 흐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5. 가입 규모와 개인별 책임을 신중히 구분해 주십시오

특검은 교인들의 당원 가입이 실제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당원명부와 관계자 진술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가입 사실과 규모가 인정된다면 그 의미를 엄정히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입 결과 자체가 모든 공모 혐의를 자동으로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원 가입을 권유한 사람, 그 요청을 전달한 사람, 승낙한 사람, 실제 가입을 실행한 사람은 각각의 역할이 다를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의 무게가 그 차이를 지우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피고인에게 직접 연결되는 증거가 있다면 인정하시되, 그 범위 밖의 행동을 피고인의 책임으로 넓히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기간에 다수의 교인이 정당에 가입했다는 자료가 존재하더라도, 그 사실이 피고인의 요청에 따른 것인지는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입을 권유한 통일교 내부의 지시와 피고인 사이의 연락이 기록으로 이어지는 부분, 그 사이에 단절된 부분을 모두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6. 피고인 측의 방어와 증거에 관한 부탁

첫 공판에서 피고인 측이 공소사실을 부인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범행을 부인한다는 사실 자체가 반성의 부족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부인한다는 사정만으로 무죄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떠한 진술이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인지, 연락기록과 가입자료 등에 부합하는지는 재판 과정에서 가려질 것입니다.

저는 피고인이 하지 않은 사과를 했다고 적거나, 확인되지 않은 선행을 들어 선처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확인 가능한 행위와 증거가 피고인의 책임을 가르는 기준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계자의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뀌었는지, 다른 기록과 일치하는지, 그 진술의 의미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추정으로 확대되지는 않았는지도 재판에서 가려질 것입니다. 정확한 증명으로 의심이 해소된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을 구분해 주신다면 그 판단을 존중하겠습니다.

7.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개인별 사정을

재판부께서 일부 혐의를 인정하시게 된다면 그 경우에도 피고인의 실제 관여 시기와 정도, 약속의 구체성, 실행된 행위와 결과를 구분하여 형을 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불리한 사실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다른 관계자의 행위나 전체 가입 규모가 피고인의 개인적 실행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까지 형벌에 더해지는 일이 없도록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을 정할 때에는 이미 유죄 판단의 기초가 된 요소와 별도로 평가할 사정이 무엇인지도 신중히 살펴 주십시오. 피고인의 지위만으로 책임을 면하게 해 달라는 뜻이 아니라, 법률상 인정되는 책임보다 더 무거운 평가가 더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8. 법률에 따른 공정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정당법 제50조의 구성요건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증명의 기준에 따라 피고인 개인에 관한 공모와 이익 제공 약속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를 심리해 주십시오.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여 주시고, 책임이 증명되는 부분에는 그 범위에 상응하는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당의 공정한 운영을 지키는 일과 피고인의 방어권을 지키는 일은 함께 실현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부디 사회적 관심이나 선입견보다 법정에서 확인된 사실과 기록에 근거한 판단을 내려 주십시오.

9. 결어

존경하는 재판부께 마지막으로 간곡히 호소합니다. 사건에 관여한 여러 사람의 행동을 하나의 책임으로 단순화하지 마시고, 김건희 피고인이 실제로 알고 의도하여 행한 부분만을 세심하게 가려 주십시오. 증명되지 않은 혐의에는 무죄를, 책임이 인정되는 부분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의 공정하고 관대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재판에 신중한 마음으로 임해 주시는 재판부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탄원인 성명: _____

주소: _____

연락처: _____

서명 또는 인: _____

참고자료

1. 서울중앙지방법원 온라인 방청 신청 안내

법원·공판 | 2026. 10. 2. 기일 안내 확인

제27형사부 사건번호 2025고합1506 및 공개된 공판기일 표시. 방청 안내는 재판 결과나 증언의 진실성을 증명하지 않음.

https://seoul.scourt.go.kr/attend/AttendList.work?pageIndex=2

2. 김건희 등 정당법 위반 사건 첫 공판, 혐의 부인

공판 보도 | 뉴시스 | 2026. 8. 21.

특검의 공모·이익 제공 약속 주장과 김 여사 측의 부인, 공범과 약속을 둘러싼 공방.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821_0003757429

3. 통일교 집단가입 첫 공판에서 특검과 피고인 측 주장

공판 보도 | 연합뉴스 | 2026. 8. 21.

특검이 당원명부 및 관계자 진술을 근거로 들었고 변호인은 직접적인 의사연락 증명을 다투었다는 보도.

https://www.yna.co.kr/view/AKR20260821086000004

4. 정당법 위반 사건 공판준비기일과 첫 공판 계획

공판 일정 | 뉴시스 | 2026. 7. 3.

형사합의27부 심리, 증인 신청 및 변론 계획에 관한 준비기일 보도. 계획된 일정과 실제 진행 기일은 구분 필요.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703_0003694813?pc_view=1

5. 정당법 제50조 적용 및 집단입당 관련 추가 기소 보도

공소 내용 | 뉴시스 | 2025. 11. 14.

강제입당 금지와 별개로 당대표경선 등의 매수·이해유도죄가 문제 된다는 공소 설명.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114_0003403984

참고자료

6. 정당법 제50조(당대표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 후보의 선출 또는 선거인의 투표와 관련한 이익·직 제공 또는 약속 등의 처벌 요건. 실제 행위 당시 적용 법령과 비교하여야 함.

https://www.law.go.kr/법령/정당법/제50조

7. 형법 제30조(공동정범)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2인 이상의 공동범행과 개인별 가담을 판단하기 위한 기본 조문.

https://www.law.go.kr/법령/형법/제30조

8.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재판에서 사실 인정과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의 기준.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07&lsiSeq=290189&urlMode=lsScJoRltInfoR

9.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유죄 판단이 있을 경우 동기·수단·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는 양형 기준.

https://www.law.go.kr/법령/형법/제51조

※ 위 자료는 공개된 법령·판례·공판 보도입니다. 보도된 당사자의 주장은 재판부가 확정한 범죄사실을 의미하지 않으며, 공소장·공판조서 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